

#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주 찬 식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서1 선거구 이 창 섭 의원입니다.

이렇게 선배·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도로  
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  
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□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장의 관리하는  
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  
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. 시  
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기금의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

불구하고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위원회 심의가 절차 이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위험이 큰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, 위원회의 대면심의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심의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 따라서, 도로굴착복구기금심의회 회의출석을 회의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장님!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

-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